

유엔총회

2006.8.23

원본: 영어

제 61회

임시 안의 제 62번

아동권리의 증진과 보호

아동권리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를 위한 독립적 전문가의 보고서

사무총장의 보고

사무총장은 유엔총회의 회원들에게 아동폭력에 대한 UN연구를 위한 독립된 전문가 보고서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Paulo Sérgio와 Pinheiro는 유엔총회 결의안 57/90에 준거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사무총장은 유엔총회가 이 연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이 중요한 주제의 결론과 제언의 실행에 대한 후속작업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요약

2002년 유엔총회 결의안 57/90에 준거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가인 Paulo Sérgio와 Pinheiro가 연구한 내용에 기초한 이 보고서는 아동폭력에 대한 국제적 양상을 보여주고, 이런 이슈에 대처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언을 시사해 준다. 가족, 학교, 아동보호시설, 격리시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곳과,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지역적 국가적 조언, 전문가 주제 회의, 현장 견학 등 참여적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다. 또한 많은 정부가 2004년 독립적 전문가가 전달한 설문지에 응답하여 주었고 이를 활용하였다.

독립적 전문가는 정부, 지역기구, 정부간 기구, UN,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아동들의 연구를 위한 지원에 매우 감사한다.

목차

	문단 번호
I. 도입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1-23
A. 훈령 및 연구의 범위	7-10
B. 연구 절차	11-23
II. 국제적 문제	24-37
A. 숨겨진, 보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문제	25-27
B. 드러난 양상	28
C. 위험요소, 보호 요소	29-35
D. 광범위한 과급효과	36-37
III.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38-80
A. 가정과 가족	38-47
B. 학교에서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	48-52
C. 보호 및 사법제도안에서의 폭력	53-63
D. 노동 환경에서의 폭력	64-68
E.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69-80
IV. 연구성과	81-89
V. 결론	90-93
VI. 제언	94-123
A. 포괄적인 제언	96-109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강화	96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97-98
3. 예방우선	99
4. 비폭력의 가치와 인식 증진	100
5.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개선	101
6. 회복 및 사회재통합 서비스제공	102
7. 아동참여보장	103
8. 접근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104
9. 책임보장과 처벌 감형의 폐지	105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폭력에 대한 대응	106
11. 제도적인 국가자료 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107

12. 국제적 약속의 강화	108-109
B. 환경 특별 제언	110-114
1. 가정과 가족	110
2. 학교와 그 외 교육 환경	111
3. 보호 및 사법제도	112
4. 노동현장	113
5. 지역사회	114
C. 시행과 사후점검	115-123
1. 국가 및 지역적 수준	116-119
2. 국제적 수준	120-123

1. 도입 : 폭력으로부터의 아동을 보호

1. 아동에 대한 폭력은 정당화 할 수 없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은 예방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 계층, 교육적, 경제적 수준, 인종적 차이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폭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바이다. 인권에 대한 책임과 아동발달 욕구와 위배되게 모든 지역에서 아동폭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동폭력은 합법적으로 정부의 허가 하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통" 또는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들로부터 정당화되어 일어나는 것을 중단하는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타협될 수 없다. 아동의 잠재력과 취약함, 성인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아동의 특성은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더욱더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3. 문화,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은 근절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사회의 인식을 전환시켜야함을 의미한다.

4. 본 연구는 처음으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과 관련하여 UN에서 실행한 국제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Graa Machel이 작성하여 10년 전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분쟁 지역의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토대를 두었고, 세계보건기구의 "폭력과 건강에 대한 국제 보고"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동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동참시킨 첫 번째의 국제적 연구이다. 아동은 모든 지역적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이 경험한 폭력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아동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5. 아동폭력은 다차원적이므로 다방면의 반응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인권과 공중보건, 아동보호를 종합하였고, 이처럼 다양한 실무의 전문가들이 연구에 협력하여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폭력에 대한 원인, 결과, 예방을 설명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6. 아동폭력에 대한 보호는 긴급한 문제이다. 아동은 수세기 동안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당해왔으나, 보여지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이제 아동폭력에 대한 범위와 영향이 더 잘 알려졌으므로, 아동에게 그들의 절대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보호 및 예방이 실시되어야 한다.

A. 훈령 및 연구의 범위

7. 2001년 아동권리위원회의 제언에 의하면 유엔총회는 결의안 56/138에 의해 사무총장이 아동폭력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할 것과 회원국이 적절한 관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언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3년 2월, 본인은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연구를 지휘하도록 임명받았다.

8.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1조에 나와 있는 아동의 정의를 따른다. :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폭력에 대한 정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 19항 이다: "모든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폭력, 상해, 학대, 무시 또는 무관심한 태도, 학대 또는 착취, 성적 학대". 또한,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의 정의도 따른다: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¹

9. 보고서는 다양한 세팅에서의 아동폭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학교, 대체적인 아동보호 시설, 격리시설, 아동노동이 이뤄지는 곳, 지역사회이다. 분쟁지역의 아동관련된 사항은 아동과 무력분쟁을 위해 임명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의 임무이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분쟁지역의 아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난민과 기타 이주 아동에 대한 폭력과 같은 주제는 다루고 있음을 밝혀둔다.

10. 이 보고서는 연구조사결과와 제언을 포함하는 심층 자료를 책의 형태와 아동우호적인 버전으로 추가된다.

B. 연구절차

11. 본 연구를 준비하는데 있어, 본인은 regional(지역적), subregional(소지역), 국가적 자문협의회, 전문가 주제 회의, 현장 견학 등을 포함하는 참여 절차를 실행했다. 2004년 3월 본인은 아동폭력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131건의 응답을 받았다.²

12. 2005년 3월과 7월 사이에, 캐리비언, 남아시아, 중서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동아시아 태평양, 중동과 북아프리카,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남부 아프리카의 9개 지역 자문협의회가 모였다. 각각의 자문은 정부 장관과 공무원, 의원, 지역 대표, 기타 정부간 조직과 UN, NGO, 국가의 인권 단체인 NHRIs, 기타 시민 단체(미디어, 종교 조직, 아동)를 포함하여 평균 350명의 참가자에게서 받았다. 아동은 각각의 지역 자문협의회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연구를 위한 의견과 제언을 개발하여 제공했다. 각 지역 자문협의회의 보고서와 제언들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다. 다수의 소지역과 국가 자문협의회 또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13. 이러한 자문협의회를 개최하는 정부는 연구의 진전을 위해 활발히 개입하였다.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 아랍 동맹(the Arab League), 캐리비언 지역사회(the Caribbean Community(CARICOM)),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미국조직의 인권을 위한 미대륙 국가간 위원회(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와 지역협조를 위한 남아시아협회(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와 같은 지역 조직은 자문협의회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적, 지역적 조직은 연구의 후속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14. 본인은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하이티, 온두라스, 인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말리, 파키스탄, 파라과이,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본인은 이러한 자문협의회가 열린 정부와 방문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5. 본인은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이전 인권위원회의 특별 절차 훈령소지자들과 (special procedures mandate holders) 정기적인 자문협의회를 열었다. 특별 절차의 훈련소지자들의 보고서와 정부보고서에 대한 권고안들을 모두 분석하였다.

16. 본 연구와 제네바의 사무국은 3개의 UN 기관들에 의해 지원되어왔는데, 이들은 UN고등인권위원사무국(OHCHR), 유니세프(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로 이뤄진 편집위원회였다.

17. 세계노동기구(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약물범죄사무국(UNODC), UN경제사회여성발전부(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of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등 많은 다른 조직도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UN관계부처 조직 또한 연구의 후속작업을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모임을 가져왔다.

18. 본인은 또한 지난 3년 동안 아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에 도움을 받았다. 전 세계 270명 이상의 개인과 조직이 공식적 제출물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였다. 아동이 제출한 자료와 주요 연구 보고들 또한 포함되었다.³

19. NGO들이 제출한 보고서도 매우 주요한 공헌을 하였다. 연구초기에 NGO자문 패널이 형성되었다. 이 패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동과 청소년들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본인은 또한 아동권리 위원회를 위해 형성된 NGO Group산하의 아동과 폭력을 위한 소위원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0. 수많은 연구들을 준비하는 국제세이브더칠드런연맹은 Unicef와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지역 자문협의회와 아동의 참여를 도와줌으로써 특별한 지원을 해주었다. 국제아동권리정보네트워크(CRIM)는 본인의 아동면담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과정을 문서화해왔다. 이는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1. 연구 센터와 네트워크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자문협의에 참여해 주었다. 유니세프 이노센티 연구 센터는 아동매매, 여성할례, 인권기준과 아동보호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자료를 제출했다. 성별과 관련된 폭력, 학교, 집과 가족, 아동, 청소년 정의 시스템과 법적분쟁 중인 아동에 대한 주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종교 조직, 정보와 의사소통기술, 피난민과 기타 난민아동, 폭력 측정 방법 연구와 관련된 주제회의 또한 개최되었다.

22. 본 연구의 준비는 지역적국가적 활동을 야기시켰다. 많은 나라에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국가적 논쟁과 액션을 취해야한다는 인식증진과 후속 활동을 이미 실시하였다.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가 지역적 후속작업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랍 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등 멤버십의 영역을 확대시켰다. 정부간의 주체로서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남아시아 포럼은 모든 나라의 대표와 함께 장관급 수준에서 실시되었다. 첫 2년 동안에 사무국은 파키스탄에 주재한다. 류블라나 자문협의회의 후속으로 유럽 이사회는 2006년 4월에 "아동을 위한 아동과 함께 하는 유럽 건설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는 연구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아동폭력 근절을 위해 각 나라에 정책과 기술적 지지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6년 4월, 지역 자문협의회에 참여했던 아동들이 뉴욕에서 자문협의회와 다른 회의에서 받아들여질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제언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

23. 본 연구 절차는 특히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촉진제가 되길 바라는 아동들에게 높은 기대를 받으며 제작되었다. 본인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II. 국제적 문제

24. 잔인하고 모욕적인 체벌, 여성할례, 방임, 성학대, 살인, 기타 다른 형태의 아동 폭력에 대한 보고는 그동안 기록되어왔으나 이러한 국제적 문제의 심각하고 긴급한 특성은 최근에야 드러나게 되었다.

A. 숨겨진, 보고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문제

25. 아동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문화적 물리적 환경에 의한 희생자와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아동폭력의 대다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숨겨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두려움인데, 많은 아동은 아동폭력의 경험이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부모는 아동폭력이 가족이나 배우자, 고용주나 경찰, 지역사회 지도자 등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되었을 경우 침묵을 지킨다. 두려움은 아동폭력 기록의 낙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히 아동의 안전이나 삶의 질보다 가족의 "명예"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욱 그렇다. 특히 강간이나 또 다른 형태의 성학대인 경우 배척하고, 더 나아가 폭력 또는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과 가해자 모두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피할 수 없거나 정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보이거나 지속적인 신체적 상처가 없는 경우 신체적/모욕적 체벌, 왕따와 성적 괴롭힘을 통한 훈육은 정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체벌에 대한 분명한 법적 금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반영한다. 아동폭력근절을 위한 국제단체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에 따르면 적어도 106개국에서 학교 체벌을 허용하고 있고, 147개국에서는 대안적 보호 환경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지 않는가 하면, 16개 국가만이 집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27. 폭력 보고하는 것이 아동이나 성인이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들이 경찰과 사회적 서비스 또는 다른 권위를 가진자를 믿지 않는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폭력을 보고할 기관이 없다. 데이터가 수집된 지역에서 모두가 완벽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법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호 시설과 수용 시설에서의 폭력에 대한 자료는 거의 수집되지 않았는데, 이는 폭력이 행해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시설은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거나 드러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아동의 부모에게도 요청받지 않았다.

B. 드러난 양상

28. 국제통계 분석에서부터 지역수준의 활동 조사에 이르는 다양한 노력은 문제의 심각성과 지속적인 양상을 더욱 분명하게 제공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의한 자료는 어떤 폭력은 예상치 못하고 특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폭력행동에 대한 대다수는 아동이 부모님이나 학교친구, 선생님, 고용주,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 배우자 등의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 중 누군가로부터 폭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은 아동폭력의 범위를 보여주는 예이다.

- 세계보건기구는 한정된 국가수준의 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53,000명의 아동들이 2002년 살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 세계의 모든 지역의 국가들을 보면, 80~98%의 아동들이 가정내에서 체벌을 겪으므로, 이 중 1/3은 도구를 사용한 심한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다.
- 개발도상국의 보고에 의하면 국제학교보건 조사(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에서 최근 20~65%의 학령기 아동들이 지난 30일 동안 언어적, 신체적 왕따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왕따는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¹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02년 동안 18세 미만의 1억5천만 명의 소녀와 7천3백만 명의 소년들이 성관계 또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적 폭력을 강요받았다고 한다.¹¹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억 명에서 1억4천명의 소녀들이 여성할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¹² 유니세프에 의하면 2005년에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이집트, 수단에서 매년 3만 명의 소녀와 성인 여성이 여성할례를 당한다.¹³
- 최근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2004년 2억1천8백만 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에 동원되었으며 이 중 1억2천6백만 명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다.¹ 2000년도 보고에 의하면 5백7십만 명이 강제노동 또는 노예적 노동에 동원되었고, 1백8십만 명이 성매매나 포르노그래피를 강요당했다. 그리고 1백2십만 명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었다.¹ 그러나 2002년에 보고된 자료와 비교해 보면, 아동노동의 경우 11% 줄어들었으며, 25% 줄어든 아동이 위험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C. 위험 요소, 보호 요소

29. 경제 수준, 지위, 연령, 성별은 치명적 폭력과 관련된 많은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02년도 아동살해 비율이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2배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100,000명 인구의 (2.58 대 1.21) 가장 높은 아동살해 비율은 청소년 특히 15세에서 17세의 소년의 경우 (여:3.28; 남:9.06) 많이 발생하고 0세에서 4세의 유아에서 (여:1.99; 남:2.09) 많이 발생한다.¹

30. 연구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은 신체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성

폭력은 주로 사춘기에 이르렀거나 청소년기인 아동들에게 가해진다. 남아들은 여아들보다 신체적 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반면 여아들은 성폭력, 방임, 매춘 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폭력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¹ 행동양상, 고정관념적 역할 등의 사회/문화적 형태와 수입이나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소규모의 연구들에 따르면 어떤 집단의 아동들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고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장애아동, 소수인종 아동, 거리의 아동, 법적문제에 휘말린 아동, 난민 또는 피난민 아동 등이 이에 속한다.

32. 불평등한 부의 성장, 국제화, 이민, 도시화, 에이즈와 같은 건강 위협, 기술 발전과 분쟁 등은 아동을 대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를 다루고 새천년 개발목표와 같은 국제적으로 동의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동폭력 근절에 도움을 줄 것이다.

33. 아동폭력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있듯이 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는 요소도 있다. 비록 더 많은 이러한 보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정된 가족 단위는 모든 세팅에서 아동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34. 집에서나 다른 세팅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요인은 좋은 부모역할과 부모와 아동 간의 강한 유대감, 긍정적인 비폭력 훈육을 말한다. 학교에서의 폭력을 보호하는 요인은 학교 정책, 비폭력, 비차별적 태도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단결은 비록 다른 위험요소가 존재한다할지라도 지역사회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35.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복원력을 높이는 여러 요소를 연구들이 밝혀냈다.¹⁹ 이러한 복원력을 높이는 요인은 가족의 성인과 아동 간에 안전한 친밀감, 아동기 때 부모가 아동을 잘 돌봐주는 것, 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와의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 학대나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동료들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이 있다.

D. 광범위한 파급효과

36. 비록 아동폭력의 결과가 그 성질이나 가혹함에 따라 매우 다양해질 수 있지만 장/단기의 영향은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이다. 폭력은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결함과 약물중독,²⁰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건강 위협 행위들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²¹ 관련된 정신건강과 사회 문제는 불안, 우울증, 환각, 능률저하, 기억문제, 공격행동 등을 포함한다. 어린나이에 폭력에 노

출되는 것은 나중에 폐, 심장, 간 등에 질병, 성병과 사산, 자살과 배우자 폭행을 야기할 수 있다.²²

37. 아동폭력에 대한 경제적 국제소요비용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다양한 장/단기 경제적 비용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6년 미국에서 아동 학대, 방임, 사후의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치료를 위한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은 124억 달러로 나타났다.²³

III. 아동폭력이 발생하는 환경

A. 가정과 가족

38.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다. 이는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문 16조와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조약과 시민적 정치적 국제조약 제 23조에 공포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서문에 의하면 가족은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적인 환경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제공하고 아동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잠재력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의 사생활과 자율성은 모든 사회에서 가치 있고, 가족들의 사생활 보장권은 국제인권조약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²⁴ 아동폭력을 다루고 근절하는 것은 모든 사적 영역과 비교하여 가족의 구조 안에서 가장 도전적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생존, 발달, 존엄과 신체적 통합에 대한 권리는 대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정부의 책임 또한 대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39.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한 신체적, 의도적인 방임, 성적, 심리적 폭력과 같은 아동폭력의 심각성은 최근 몇 십년 동안 인지되고 문서화되어왔다. 영유아기부터 18세 까지 아동은 가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령 및 성숙도에 따라 부모, 양부모, 위탁부모, 형제, 기타 다른 가족 구성원, 보호자 등 다양하다.

40.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아동폭력은 치명적이지 않고, 영구적이거나 심각한 외상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정에서 매우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어떤 폭력은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영구적 상처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각 국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유아의 머리 또는 뇌 손상과 빈번하게 관련이 있다고 한다.²

41.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주 발생하고 신체적, 모

육을 주는 체벌의 형태로도 발생한다.²⁶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혹한 체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것이다. 보고서에 기록되고 연구 지역 자문협의회에서 발언하였던 아동들에 의하면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체벌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아 괴로웠으며,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훈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²⁷

42. 신체적 폭력은 종종 심리적 폭력을 동반한다. 모욕, 헐뜯, 격리, 거절, 위협, 정서적 무관심 등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성장을 해치는 폭력의 형태이다. 특히 부모와 같은 성인에 의해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그렇다. 부모가 비폭력적인 훈육방법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43.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방임은 질병을 치료받아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아동이 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게 하므로 사망과 질병을 야기한다. 여아와 남아의 성비율의 불균형이 있는 지역에서 여아는 특히 폭력과 함께 방임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장애는 방임의 확률을 높인다. 장애아동들은 버려지기도 하고, 이 또한 장려되거나 용납되기도 한다.²⁸

44. 가정에서 성폭력의 발생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구성된 21개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7~36%의 여성과 3~29%의 남성이 아동기에 성학대의 피해자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1.5~3배 정도 더 학대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다.²⁹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여러 나라를 연구한 자료에서도(개발도상국과 선진국 포함) 1~21%의 여성이 15세 이전에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다수의 경우 아버지나 양아버지이외의 다른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가해진 것으로 밝혀졌다.³⁰

45. 결혼 연령이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아동이 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 8천2백만 여아가 18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많은 수의 아동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압된 성관계와 같은 폭력의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

46. 유해한 전통관습은 아동에게 적절치 못하게 영향을 미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부모나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아동들에게 강요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에 의하면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 유럽, 캐나다, 미국 이민자 지역 등에서 여성과 여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관습인 여성할례는 어린 여아에게 더욱 많이 실행되고 있다고 한다.³² 그 밖에 묶기, 상처내기, 화상, 낙인, 종교적 예식, 살찌우기, 결혼강요, "명예"를 위한 범죄, 신부지참금과 관련된

된 폭력, 엑소시즘이나 마력 등이 존재한다.

47. 1억3천3백만에서 2억7천5백만 명의 전 세계 아동이 매년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³³ 집에서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주로 부모들끼리 또는 동거자와의 싸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은 아동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기와 성인기에 개인 성격 발달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남아프리카의 연구에서는 동거자의 폭력 또한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³⁵ 인도의 연구에서는 가정 내 폭력이 아동폭력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³⁶

B. 학교에서와 교육현장에서의 폭력

48.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동들은 집밖의 교육환경에서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는 아동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감독하는 성인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지원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49. 교육현장은 많은 아동들을 폭력에 노출시키고 폭력을 보며 배우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중인식은 극단적인 총기사례나 유괴사례들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에 의해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죽음이나 증상들은 집에서나 사회에서보다 훨씬 희소하다.

50. 학교교사 및 그 밖의 학교 교직원에게 의한 학교폭력은 체벌, 심한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처벌, 성폭력 그리고 권한을 막무가내로 행사하는 등이 있다. 때리는 등의 체벌은 많은 국가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례적인 행위이다. 아동권리협약은 국가들로 하여금 학교체벌이 이 협약에 일치하게 실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모든 신체적 체벌 폐지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The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은 집행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미 102개국에서 학교체벌을 금하고 있으나, 집행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다.³⁷

51. 학교폭력은 놀이터에서의 형태로도 발생한다.³⁸ 어떤 국가에서는 싸움을 가벼운 징계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괴롭힘은 주로 빈민가정의 아동들이나, 소수민족그룹 또는 개인적인 결함 (외모나 정신장애)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괴롭힘은 보통 비하하는 말로 상대를 낮추지만 신체적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학교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조직 폭력적 문화와,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³

52. 성폭력 및 성별에 관련된 폭력도 교육현장에서 자주 일어난다. 여학생들이 주로 남자교사들이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폭력은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들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못해 더욱 쉽게 일어난다.

C. 보호 및 사법 제도 안에서의 폭력

53.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특히 남자아이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아원이나 보호원,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의 보호기관 또는 사법제도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이런 아동들은 그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감독관이나 직원들의 폭력에 의한 위협에 처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런 통제시설에서 벌어지는 체벌을 금하지 않고 있다.

54. 혼잡하고 누추한 시설상태, 사회적인 낙인 및 차별행위, 그리고 직원들의 잘못된 교육은 폭력을 유발시킨다. 효과적인 항의, 모니터링, 감사 및 적절한 정부규제와 감시는 주로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일부의 가해자는 오해를 저지른 후에 처벌받지 않음으로 폭행에 대한 관대라는 어긋난 사회적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 수용시설의 영향은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 제도적인 결함에 의해 상처 입은 아동들은 경험에 의한 일시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심한 성장둔화, 신체장애,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자살충동 및 상습적 범행등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55. 세계적으로 8백만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관에서 생활한다.¹ 이들 중 극소수만이 고아이기 때문이고, 대부분은 장애, 가족불화/분열, 가정폭력 및 빈곤을 포함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인해 보호를 받는다.

56. 보호기관 직원들이 "훈계"의 명목으로 저지르는 아동대상 폭행에는 손, 막대기, 호스 등으로 때리는 행위, 아동의 머리를 고의로 벽에 내려치는 행위, 옷장 속에나 추운 방안에 며칠 씩 아동들을 감금하는 일, 아동 자신들의 배설물에 눕게 하는 행위들이 있다.²

57. 보호기관에서는 장애아동들이 치료라는 핑계 속에서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아홉 살 밖에 안 된 아동들이 완화제나 마취 없이 전기경련요법(ECT)을 받기도 한다.³ 전기충격은 아동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약물은 아동들을 순종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고, 그들을 폭력으로부터

터 무방비 상태로 만든다.

58. 방임은 많은 낙후된 보호기관들에서 흔히 발생하므로 많은 아동들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많은 시설들에서 장애아동은 교육, 오락, 재활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길이 없다.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그냥 침대에 장시간 동안 아무의 관심이나 보호 없이 방치된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킨다.

59. 보호기관의 아동들은 타 아동들의 폭력에 의해 피해입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다. 이는 특히 관리시설이 열악하고 관리관의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인 아동들이 어리거나 약한 아동들과 분리되지 않았을 때 많이 발생한다. 관리직원들은 가끔 이런 아동들 사이에 학대를 허락하고 더욱 부추기기까지 한다.

60. 실제로는 국제 시민 및 정치 권리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만, 어떤 국가들은 여전히 18세 이하의 아동범죄에 대한 사형을 허락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31개국의 나라가 범죄를 지은 아동들에 대해 체벌을 허락하고 있으며, 이는 보통 매질, 채찍질, 돌로 치기나 신체부위 절단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동반 할 수 있다.

61. 비록, 아동권리협약의 제 3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감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최소감금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1999년에 100여만 명의 아동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이런 아동들은 사소한 범행 및 초행을 저지른 경우이며, 특히 피부림, 방랑, 가출등과 같은 일 때문에 감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유치된 많은 아동들이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않지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62. 유치된 아동들은 흔히 작은 규칙위반 행위 등으로 유치소의 직원들로부터 폭력의 피해를 입게 된다. 최소한 77개국의 나라에서는 체벌과 그 밖의 극단적인 처벌이 형벌로 허락되고 있다. 아동들은 구타, 매질, 제지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다른 유치된 사람들 앞에서 매질 당하거나 나체로 있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고문을 받는다. 여성아동들은 특히 남자직원들에 의해 신체 및 성폭력을 당하기 쉽다.

63. 아동권리협약의 사항에 근거하여 어떤 국가들은 법적으로 성인유치소/집행소를 아동시설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이는 아동들을 성인들의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들이 성인들과 함께 감금된다. 이런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아동들은 특히 자해나 자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런 환경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가끔은 감옥에서의 하루가 일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10일 후에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중동의 남아-

D. 노동환경에서의 폭력

64. 아동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다. 더구나 비공식적인 일터에서의 폭력에 관한 자료는 더욱 없다.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ILO) 제 138호 같은 국제규범은 고용최소연령 미만의 아동이 일터에 고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폭력 -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이 일터에서,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수백만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폭력은 일터의 아동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벌을 주거나 혹은 아동을 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범주의 아동노동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판정되어 그 노동은 폭력으로 간주된다.

65. 일터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 행위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비록 가해자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손님들, 십장들, 고객들, 경찰, 범죄 집단, 그리고 성폭력인 경우는 포주 등에 의해 행해지나 거의 고용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66. 16세 미만의 여자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노동범주는 가사노동으로¹ 이는 단속할 수 없는 형태의 고용이거나 착취이며 때로는 강제노동이나 노예상태로 일한다.²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과 근절을 위한 즉각적 조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ILO) 제182호에 의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으로 명시하고 있다.³ 아동노동자들은 그들이 체벌, 모욕감, 성희롱 등 혹사를 당했다고 보고한다. 또한 가사에 종사하는 아동들은 그들이 노동현장에서 끊임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한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아동들은 대개 여자 고용주에 의해 신체적, 심리적 폭력을 당하지만 흔히 고용가정의 남자가족들로부터 성 폭력의 대상이 된다.

67. 18세 미만 아동들을 매춘, 포르노그래피, 또는 이와 유사한 노동착취 하는 것은 폭력으로 간주한다. 매년 이러한 분야로 빠져드는 아동의 수가 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아동들이 강제로, 유괴를 당하거나 팔리거나 속아서, 혹은 인신매매로 이러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동매춘, 소년/소녀 매춘,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로 이루어진 성폭력에 더하여 아동들은 신체적/심리적 폭력으로 시달리곤 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흔히 도움을 찾지 못하고 혹시 그들이 도움을 청하여도 범죄

자로 취급되거나 자유를 빼앗기고, 보상에도 제한적이다.

68. 아동의 노예적 노동 (Bonded Labour)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노동형태이다. 강제노동 혹은 노예적 노동에 처한 아동들은 고용주나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나 아동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폭력이 강제노동이나 노예적 노동 아동들에게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폭력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노예들이 하던 형태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E. 지역사회에서의 폭력

69. 지역사회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단합의 근원지가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래간의 폭력이나 폭력과 관련된 총기 및 무기들, 집단의 폭력, 경찰폭력, 신체/성폭력, 유괴, 인신매매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폭력은 또한 대중매체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도 연관될 수 있다. 연령이 높은 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높고 여아의 성폭력과 성관련 폭력 (gender-based violence)위험에의 노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

70. 어떤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 가고 오는 여정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처음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기도 하다. 또 다른 아동들은 가사를 돕는 일로 물이나, 연료, 음식, 동물사료들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폭력에 노출 되기도한다. 이런 가사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여자아동들에게 부여되곤 하는데 아동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들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71. 갑자기, 그리고 급격하게 폭력이 (피해자 와 가해자 공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15세 내외의 소년들 간의 폭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요인들을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아동들에게 또래간의 폭력이 공통적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많은 곳에서 15세부터 17세 사이의 아동들 사이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들의 비율보다 세배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15세 이상의 아동들의 폭력발생율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살인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폭력 행위를 제어하는 조치들이 10대 중반 이전이거나 10대중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임을 암시한다.

72. 또래 간에 일어나는 신체폭력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성행되는데 그 도시환경이 일자리의 부족, 교육의 부족, 편의/복지시설의 부족 혹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이 있는

곳으로 젊은 층들이 도시로 몰려 빠른 속도로 인구 증가를 이루면서 좌절감, 분노, 억압된 긴장감,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폭력은 친구나 지인들 간의 분쟁이 포함되고,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도 강하게 연루 되어있다. 총기와 다른 무기들이 사용되기도 하여 이러한 싸움은 심한 부상이나 죽음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춘기 살인 발생률의 성비 차이는 남성의 사회화 과정이나 남성 다움의 기준 등이 폭력에 기여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예컨대, 라틴아메리카와 칼리비안 지역에서는 사춘기 살인 발생률이 여자보다 남자가 2-6배나 높다.¹

73. 폭력이 심각한 곳에는 경찰의 만행과 공정한 법체계에 접근의 어려움도 동시에 발생한다.² 어떤 국가에서는 조직적인 범죄나 집단 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저지하는 강한 억압적 조치를 채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강한 조치들이 일관성 있는 폭력 예방 전략과 믿을만한 자료 시스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연관되지 못할 때 폭력의 위험수위는 높아진다. 증가하는 체벌조치들과 집단 폭력배로 추측되는 자들의 대량구금, 큰 규모의 집단 폭력배들의 구금,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인 법집행 등이 가난한 젊은이들을 낙인찍는 일이 되거나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기여하게 된다.

74. 비치명적 폭력에 관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살인이 있을 때마다 약 20-40명의 희생자가 죽지는 않지만 병원치료가 요청되는 희생자가 발생한다. 살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비 치명적 폭력의 희생자들 역시 여자보다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난다.³

75. 아동들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성 폭력과 성 착취로 상처 입기가 쉽다. 성 폭력은 아동이 잘 아는 사람들, 즉 가족이나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운동코치, 성직자, 경찰, 교사, 고용주 등)에 의해 범해 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아동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가해진다.최근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은 흔히 사춘기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계의 한 특성 이라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13세-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학교에 기초한 보건연구 (Global School-based Health Survey)의 초기 보고서에 의하면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에 신체 폭력이 성행하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상대친구에게 맞거나, 뺨을 맞거나, 의도적인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하여 요르단에서는 15 퍼센트의 여자와 29퍼센트의 남아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나미비아 (Namibia)에서는 여자 9, 남자 16 퍼센트가, 스와질란드에서는 여자 6, 남자 8 퍼센트, 잠비아 에서는 여자 18, 남자 23 퍼센트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76. 지역 사회의 폭력은 소외계층의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거리아이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 - 언어폭력, 때리기, 강간, 기타 성폭력과 고문, 유괴 등 - 은 연구 자료에 흔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 한다. 모든 지역의 아동들은 그들의 사소한 범죄에도 경찰이 잔인하게 이유 없는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77.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광이 성을 즐기는 관광으로 전환되고 흔히 그러한 관광의 희생자들은 아동들이다. 인터넷과 다른 의사소통 기술의 발달 또한 아동들의 성 착취 와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위험이 심해지는 일과 연관되고 있다.

78. 난민 가정의 아동들은 독특한 폭력을 경험한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난민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에서 아동들이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특히 여아들에게 그 위험이 높다고 보고한다. 많은 난민수용소(캠프)에 안전한 건물이 부족하고, 규칙적인 법 시행이나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거나 보상 받는 체계가 부족하다. 강제적인 이주 난민의 경우 여성과 여아들이 특히 성과 관련된 폭력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여아들은 그들의 문화와 사회 경제적 위치, 법적 지위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또한 이들의 권리행사는 남자와 남아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 하는데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한다.

79.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는 여러 국가 내에서, 또 국가간의 경계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선 빈곤, 이주노동, 갈등, 인구 강제 이동에 따른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복합적인 현상이다. 인신매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폭력이 포함 된다. 유괴, 아동과 부모와 후견인 및 연계하는 중개인에 의한 속임수,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그들의 목적지로 이송되는 중 가해지는 성 폭력, 그리고 일자리를 기다리는 동안 당하게 되는 폭력 등이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인신매매 되어 빛 때문에, 혹은 계약으로 묶여서 노예처럼 강제결혼, 가사노동, 농사일로 착취당한다.

80. 때때로 대중매체는 인쇄물에서,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게임 등 시청각 자료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또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려낸다.¹ 인터넷 역시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담은 자료들을 생산하여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부추긴다. 인터넷은 아동을 유인하여 아동들에게 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한다. 인터넷은 또한 아동들을 폭력적이고 포르노그래픽한 자료들에 노출시키고, 성인들과 다른 친구들에게 당하는 왕따, 괴롭힘 등의 위험에도 노출시킨다.² 캐나다와 영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이동전화기에 의해 괴롭힘과 왕따에 희

생되고 있다고 한다.³ 또한 타인에 대한 거짓정보를 온라인에 올려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도 한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동들에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쇄물, 텔레비전, 혹은 영화를 보는 것을 제한하는 일 보다 훨씬 어렵다.

IV. 성과

81. 본인의 연구 설문지에 대한 각 정부의 응답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결과보고는 본인이 위에서 제시한 아동폭력의 모든 형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기타 기관들에 의해 이미 수많은 노력들이 개발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

82. 예방 및 조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은 지역자문단(Regional Consultations)에게 발표 되었고, 이 중요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역량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83. 192개국 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유엔아동권리 선택의정서와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많은 국가들이 비준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시행된 이래로 다른 중요한 국제문건들이 채택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비준하였다. 국제노동기구협약(ILO) 182호는 1999년에 채택되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 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억압, 차별, 그리고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선택의 정서가 2000년에 채택되었다.

84. 이러한 법적인 문건에 기초하여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고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졌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182호를 통해 새로운 노동법들과 국가 행동계획들이 제정되거나 수정되었고 가장 잔악한 형태의 노동을 없애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아동인신매매는 반 아동인신매매 법을 통하여 아동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된 국가들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력이 강화되어 왔다.

85. 본인의 설문지에 대한 답들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응한 활동들이 현저하게 입법적이었음을 알린다. 국가들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선택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 법에다가 자국의 법을 조화시켜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 개혁은 아주 미시적인 접근으로 아동폭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효과적 접근보다는 오히려 아동폭력과 관련된 그 행위(비록 중요하긴 하지만)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주 적은 수의 국가들만이 효율적으로 아동 폭력을 다룰 수 있는 관점의 법제도적 점검을 했을 뿐, 법적 개혁을 포함한 실천이 과제로 남아있다.

86. 여러 국가에서 아동폭력에 대해 언급한 법적 조치는 주로 성폭력과 신체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심리적 폭력은 간과하고 있다. 보호와 처벌에 집중을 하는 반면 회복, 재통합, 보상에는 관심이 적다. 또, 어떤 국가들은 예방을 법적 측면에서 보호와 처벌 등을 통해 단순한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

87. 본인의 설문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동폭력과 관련, 각 국가에서 행동계획, 사업, 정책고안들이 주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것 역시 아동의 성 착취나 인신매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어떤 국가들은 아동보호와 아동관련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구조- 청소년법원 혹은 가정법원을 포함한 -를 창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많은 국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권리와 아동보호 문제를 위해 아동권리옹호, 인식증진, 그리고 아동권리교육/훈련 사업들이 수행 되었다. 또한 대중매체들도 아동권리 인식 증진과 정보 확산 및 사회동원 문제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음을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들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보고 하기도 하였다. 즉, 폭력에 희생된 아동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여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폭력에 아동을 노출 시키는 등의 해로운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88. 법시행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조치들이 충분치 않지만,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 특별절차 훈령소지자들은 여러 현장에서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역 당사국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좋은 프로그램들과 조치들을 통해 여성 성기절단문제, 아동노동 특히 가장 잔악한 형태의 노동문제들, 또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 등을 철폐하기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거리아이들을 돕고 지원하기위한 프로그램들, 부모를 돕고 부모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 - 장애를 가진 아동들, HIV/AIDS에 감염되거나 영향 받은 아동들, 토착민 자녀들과 국가, 민족, 종교, 언어 등의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법들이 제정되었다.

89. 지역적 인권보호기구들이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한 법적기준을 개선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럽인권법원과 유럽 사회권위원회를 포함한 유럽 인권기구의회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적학대와 체벌을 포함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판결과 결단을 이행 하였다. 아동인신매매 및 신정보기술과 연관된 폭력을 문제 삼는 법적 문건들이 유럽 법기구 의회와 함께 개발 되었다. 아프리카연합의 회원국들은 여성성기 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 행위의 근절과 관련된 추가 조치들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아프리카 인권 헌장을 채택하였다. 또 지역 내 수준에서는 2000년에 지역협력을 위한 아시아 연합에서 아동과

여성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예방과 인신매매와의 싸움에 대한 지역협약을 채택하였다.

V. 결론

90.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위해 제안되거나 개발된 조치들의 영향을 저해하는 요인들 또한 존재한다. 이는 아동폭력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폭력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통계의 부족도 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폭력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흔히 사건에 반응하는 식으로, 폭력이 낳은 증상과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전략들도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문제제기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할당된 자원도 불충분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국제적인 약속들이 국가 수준에서 실천되지 못하였다.

91.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약속을 이미 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과정에서 만난 아동들의 증언과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폭력과 관련된 약속들이 충족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어떠한 아동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미연에 방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용납 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국들은 이제 인권에 대한 긴급한 의무수행과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국제약속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법적 의무가 당사국에게 있지만, 사회의 모든 분야와 개인들과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아동희생자들에게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인정하거나 용인한다면 그 누구도 아동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이다.

92. 동시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그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폭력의 형태,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을 반영하여 다각도로 접근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93. 연구과정에서 아래의 원칙들이 나의 제언에 영향을 주었다.

(a)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동이 성인보다 덜 보호 되어서는 안 된다

- (b) 모든 폭력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폭력을 만연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정책들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 (c) 국가는 아동들의 보호권을 지켜주고, 서비스에 도움을 받게 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정의 역량강화를 지원해줄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
- (d)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e) 아동이 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숙과정과 연관된다. 어떤 아동들은 성별, 인종, 인종적 태생, 장애 혹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특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 (f) 아동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행 될 때 반드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VI 제언

94. 본인의 제언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모든 노력에 적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고문이며, 가정과 학교, 그리고 다른 교육 세팅, 보호와 구급을 위한 시설들, 일터와 지역사회에 적용할 구체적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95. 우선적으로 국가들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의 법, 행정, 사법, 정책제정, 서비스 전달체계, 제도적 기능을 다루고 있다. 어떤 제언은 사회의 매우 중요한 다른 부분들에게 제안하는 사항들이다. 이에는 전문가기구, 무역연합, 연구소, 고용인, 그리고 비정부기관과 지역사회조직들이 포함된다. 또한 부모와 아동들에게도 전하는 제언들이다.

A. 포괄적인 제언

1. 국가 및 지방의 약속과 행동 강화

96. 모든 국가들이 아동폭력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면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개발하고 그것이 국가행동계획 절차에 통합되어야 함을 권고 한다. 한 국가의 전략, 정책, 행동계획은 현실감 있어야 하고, 기한 안에 시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광범위한 시행전략에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킬 역량이 갖춰진 기관과 협력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 전략, 정책, 계획, 그리고 사업들은 국제적 인권과 공인된 과학적 지식에 충분히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의 전략, 정책, 계획의 실행은 목표와 시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략, 정책, 계획과 사업은 각국의 상황과 자

원을 충분히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2.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금지

97. 본인은 18세 미만의 어떤 아동도 사형제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석방의 가능성 없는 종신형에 처해도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한 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사형집행을 즉시 정지하고 국제 인권기준에 준한 다른 방법으로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한다. 18세에 이르기 전에 지은 범죄에 대하여 내려진 사형선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98. 본인은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 모든 장소에서의 폭력들, 즉 체벌이나 조기결혼, 여성 성기절단 같은 해로운 전통적 습관들, 그리고 소위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범죄, 성폭력, 고문을 비롯하여, 다른 형태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등은 아동권리협약이나 고문 및 다른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국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등 국제적인 법적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 되어야 한다. 아동권리 위원회가 General comment No. 8 (2006) 에서 아동들을 체벌과 그 외 잔인하고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협약 제19항, 제28항 2호, 특히, 제37항) (CRC/C/GC/8)

3. 예방우선

99. 본인은 국가들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관련, 그 근본원인을 다루면서 미연에 방지 하도록 권한다. 폭력이 발생한 후 개입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고 위험한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이 분배되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 즉,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부재, 가족해체, 알코올과 약물 남용 그리고 총기나 다른 무기예의 접근성 등을 다루어야 한다.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라서, 빈곤, 성별 및 다른 형태의 불평등, 수입의 격차, 실업, 도시인구집중 등 사회를 약화시키는 모든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비폭력 가치와 인식증진

100. 본인은 국가들과 시민단체들이 아동폭력, 일반화 되어있는 성역할과 차별, 체벌의 수용, 그리고 해로운 전통관습들을 눈감아주거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 국가들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

고,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이해 시켜야 한다. 아동폭력으로 생기는 해로운 영향에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모든 행태의 언론 매체가 아동권리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들은 대중매체가 비폭력 가치를 갖도록 유도하며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5.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 개선

101. 아동을 위해 일하거나 아동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동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야 함을 권고 한다. 일차적, 그리고 이후의 연수를 통해 또는 사업 활동 중에 아동의 권리존중과 아동권리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 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과 가족들을 위하여 일하는 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 모두가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투자 하여야 한다.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명백한 활동 기준들이 조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6. 회복 및 사회 재통합 서비스 제공

102. 각 국가는 입원전의 간호와 긴급 치료, 그리고 아동을 위한 법의 지원은 물론 폭력이 목격되거나 적발되는 등의 적절한 경우에는 아동의 가족들에게도 법률적 지원과 접근 가능한 보편적인 보건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건, 범죄 재판, 사회복지 제도는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고안되어야 한다.

7. 아동 참여 보장

103. 각 국가는 적극적으로 아동의 참여를 도모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2항을 고려하여, 아동폭력의 예방, 대응, 모니터링의 모든 방면에 대한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폭력에 대처하고자 하는 아동기구와 아동중심프로그램들은 지원받아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8.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 아동적인 신고 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104. 아동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보호 및 처벌기관에 있는 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이 학대를 신고하고, 전문 상담가에게 말하고, 지원 및 조언을 비밀리에 요청할 수 있는 상담전화서비스와 같은 방법들이 고안되어야 하며, 신기술을 이용하여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의 수립도 고려되어야

한다.

9. 책임보장과 처벌 감형의 폐지

105. 각 국가들은 모든 아동 폭력범을 적합한 형사상, 시민의, 행정의, 전문적 절차와 제재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폭력범죄와 아동성학대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들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0. 성별적 차원의 아동 폭력에 대한 대응

106. 각 국가들은 폭력에서 여아와 남아가 겪게 되는 다른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비폭력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성인지의 측면에서 고안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들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이며, 폭력예방의 포괄적 전략 중 한 부분으로써 성차별의 모든 형태에 대응해야 한다.

11. 제도적인 국가 자료 수집과 조사의 개발 및 시행

107. 각 국가들은 취약 그룹을 찾아내고, 모든 단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목표달성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및 정보 체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제적으로 동의된 기준들로 국가 지표를 나타내야 하고, 각 시대의 진행과정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취합, 분석, 배포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 경우, 전체적인 국가적 자료수집에 출생, 사망, 결혼 자료 등록을 생성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한다. 국가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과 형사상 관할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자료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자료는 성별, 연령, 도시/시골, 가정, 가족 특징, 교육, 인종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자행되는 상황들에 대한 아동폭력 국가연구안 개발을 제안하는데, 조사는 취약한 여아와 남아 그룹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동 및 부모와의 인터뷰 등으로 실시될 수 있다.

12. 국제적 약속의 강화

108. 각 국가는 아동권리협약과 무력 분쟁상황에 있는 아동들의 참여와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두개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시행해야 한다.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의 행동계획(Plan of Action)과 비엔나 선언에 따라 협약과 선택의정서의 목적과 동기에 모순된 유보사항들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관련된 국제 및 지역 인권협약들을 비준해야 한다. 관련 인권협약은 다음과 같다: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와 이의 선택의정서,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와 이의 선택의정서, 최소고용연령에 대한 ILO 제 138호, 최악의 아동노동에 대한 협약 제 182호,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완하는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국가는 국가의 모든 국제적인 법적의무를 시행해야 하고, 협정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109. 각 국가는 폭력 및 보건에 대한 세계 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의 제안사항 시행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보건총회 결의안과 그 외 본 결의안을 지지하는 지역공공보건 결의안과 관련하여 유엔아동총회에서 수립된 폭력에 방을 위한 약속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B. 환경 특별 제언

1. 가정과 가족

110. 가족은 아동발달과 양육에 대한 주요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보호를 위해 부모와 양육자들을 지원할 것을 숙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 한다:

(a) 아동양육의 역할에 있어서 부모와 그 외 양육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한다. 보건,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질 높은 초기아동발달 프로그램, 가정 방문, 출산 전·후 관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입증대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b)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구체적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가정들에는 여성 혹은 아동 가장인 가정, 소수민족이나 차별을 당하는 그룹에 속한 가정,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포함된다.

(c) 훈육의 비폭력적인 형태를 중점으로 하는 성인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동의 발달 역량과 아동관점존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부모-아동 관계를 촉진하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훈육의 형태와 아동발달 접근들을 소개해야 한다.

2. 학교와 그 외 교육환경

111.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친아동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폭력을 묵과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는 시정되고 비폭력적 가치들과 행동이 학습되어야 함을 숙지하면서, 다음

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 (a) 국가는 학교가 성차별 고정관념과 행동, 그리고 차별의 다른 형태들과 관련, 모든 직원과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 (b)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 혹은 신체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들을 채택하도록 한다.
- (c) 비폭력적인 분쟁해결방법과 같은 기술들의 수립을 장려, 비협박적 정책들의 시행, 학교 내의 모두에 대한 존중 촉진을 포함하는 학교 환경 실태 보고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교의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 (d) 모든 형태의 차별을 활발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촉진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교과과정, 수업진행, 그리고 그 밖의 시행들은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3. 보호 및 사법 제도

112. 국가는 보호기관과 청소년 구류시설에 있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을 숙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 (a) 시설 보호는 최후의 방법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가운데, 가정보존과 지역사회기반 대처방안들을 지원함으로써 시설기관화 비율감소를 최우선으로 한다. 가정기반 보호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어야 하는 동시에 영유 아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마다, 국가는 보호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상황 하에 그들의 가족들과 재결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 아동과 소수민족에 속한 아동은 특별히 위기에 처해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는 이러한 아동과 그들의 가정이 문화기반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 (b) "우범죄" (아동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범죄, 예, 무단결석, 가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 생존을 위한 행동들 (구걸, 성매매, 버려진 음식 등을 찾아 헤매는 것, 빈둥거림, 부랑생활), 밀매 혹은 불법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등을 비범죄화 함으로서 처벌기관에 들어가는 아동의 수를 감소한다. 국가는 또한, 국제 기준을 반영하는 포괄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회복될 수 있는 청소년 구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타인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평가된 우범자들만 구금해야 하며, 지역사회기반 재화와 재통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방법들에도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 (c) 아동을 가정 혹은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시설로 이송한 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동이 보호기관 혹은 구류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원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아동의 이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d) 보호 및 구류시설에서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고발,

조사, 강화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e) 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있도록 하며 그러한 권리들이 보호되기 위한 방법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 사전공고하지 않은 방문을 행하고, 사적으로 아동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실시하며, 폭력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진술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독립 기관에 의해 보호 및 구류시설들이 효과적으로 모니터 되고 정기적으로 접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구류시설에 예방을 위한 독립적인 방문 가능 제도를 제공하는 고문반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한다.

4. 노동현장

11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제 138, 182호,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그 외 국제협약들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미성년은 노동에 가담할 수 없으며, 일터에 있는 모든 아동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보호해야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제안 한다:

(a) 국내 노동법을 시행하고, 아동노동철폐를 국가 개발 정책으로 포함시키고, 아동노동의 “잔혹한 형태”를 제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데, 이러한 “잔혹한 형태”는 폭력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착취가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 어업, 가사일과 같은 비공공부문에서 아동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에 아동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b) 아동이 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 (즉, 국제협약을 준수하는)에서는 폭력 예방프로그램, 고발 제도, 소송절차들을 명백히 포함하는 규제제도와 조사과정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c) 아동이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미성년과 “잔혹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들이 일을 그만 두고,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더 이상의 희생 없이 삶의 기회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복 및 통합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d) 기업 사회책임 방법들을 고무하고, 사기업 부문, 무역 연합과 시민 사회가 노동현장에서 예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윤리지침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기업 부문, 무역 연합, 시민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5. 지역사회

114.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이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들과 그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

음의 사항들을 제안한다:

- (a) 지역사회의 긴급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전략을 시행한다. 위험 요소들은 장소마다 차이를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알코올과 마약에 대한 쉬운 접근, 총 및 그 외 무기들을 소지하는 것, 불법적 활동에 아동을 사용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 (b)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취약성과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공공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 가정, 고용, 그리고 질 높은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시행에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 집단간, 집단내의 참여와 빈곤, 그리고 관계망 개선을 위한 접근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 (c) 특별히, 소외된 계층과 차별당하는 그룹에 속해있는 아동들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들을 대할 때에 적합한 방법들을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아동권리 교육이 경찰력을 위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안하고 시행한다. 또한, 아동발달의 단계, 정체성 발달의 과정, 아동에 대한 폭력의 형태와 성격, 일반 또래 그룹과 비행 소년 그룹의 차이점, 알코올 및 마약의 영향에 있는 아동들의 적절한 관리 등의 교육이 경찰들에게 실시되어야 한다.
- (d) 희생자와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들의 상호 추천과 사후 점검을 포함하는 통합 서비스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제공한다. 입원전의 치료와 희생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 서비스와 함께 응급치료를 개선시킨다. 가해자가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가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주어야 한다.
- (e)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지방정부 및 시민 사회의 노력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특별히, 절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염두에 두면서, 소년 소녀들을 위한 안전한 오락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등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 (f) 지방 및 시(市)정부가 물리적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돌아다니기에 안전한 길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이, 밝고 안전한 공공장소의 제공은 도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g) 관련 국제 협약과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는 적합한 법적 틀을 개발하고 인신매매근절 국내법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양자의,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아동을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법적 정의들, 절차들, 그리고 모든 단계의 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 전략은 일차 예방에서부터 인신매매 범들을 다루는 법적 강화에까지 이르러 세워져야 하고 (즉, 아동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들을 바꾸는 것), 인신매매 및 관련된 모든 착취의 희생자들이 유죄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 (h) "이중 범죄"의 조건들을 폐지하고,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법행위의 처벌 강화를 위해 국내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에 대한 선택의 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선택의 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법행위자의 본국송환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사용하는 국내법을 수정하도록 당부한다.

(i) 인신매매당한 아동이 범죄 조사와 법적 절차에 연루되는 경우, 이들에게 보호, 의료적 도움, 적절한 지원, 사회 재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들은 아동 희생자와 범죄행위 목격자를 포함하는 사법관련 사항들에 대한 유엔 가이드라인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에 만반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j) 아동의 성착취와 기타 폭력의 모든 형태에서 인터넷, 핸드폰, 전자오락을 포함한 정보기기의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위험적 상황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방법들을 지원한다.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유통시키고,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자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적절한 처벌이 있도록 조치한다.

(k) 아동 보호를 위한 전 세계적 기준이 고안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산업을 장려시킨다. 각각의 보호제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전 세계적 교육 캠페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C. 시행과 사후점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속담에 “Gu Cheung Lan Ming”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한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와 아동이 한 손이면, 어른들은 다른 한 손이다. 지역사회도 한 손이다. 정부도 한 손이다. 우리가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평화, 사랑, 화합이 있는 지역사회가 세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Young People, 아시아태평양

115. 제안된 사항들의 시행에 대한 근본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른 집단의 참여는 국가의 의무수행에 절대적인 지원이 된다. 이러한 참여는 유엔기구들, 국가 인권 기구를 포함하는 시민 사회 기구, 의사·간호사 연합과 같은 전문 기구, 지역사회 연합, 교육자, 부모, 그리고 아동을 포함한다.

1. 국가 및 지역적 수준

116. 국가차원의 시행은 지체 없이 곧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한 국가 계획 절차의 통합은 2007년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하면 장관급으로 구심점이 임명되어야 한다. 2009년까지 아동에 대한 폭력금지

법을 마련하고 신뢰로운 국가 데이터 수집 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자료를 아동 권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권고한다. 제 65차 유엔 총회에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권고한다.

117. 국제기구들은 정부가 본 제안사항들의 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 재정 기구들은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정책과 활동을 검토해주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유엔 국가 팀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들을 빈곤감소 전략, 국가 평가들, 개발 원조 틀에 포함시켜야 한다.

118. 국가 인권 기구 지위 관련 규범(The Paris Principles)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를 위한 옴부즈맨(Ombudsperson)이나 감독관의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보건과 아동보호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의 차원에서 분명한 임무를 가지고 아동권리를 모니터하는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적절한 경우, 아동을 포함한 시민들이 아동권리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사항들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9. 연구개발에 대한 지역적 기관들의 기여하는데 있어, 지역 기관들은 제안사항들의 시행과 사후점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사후점검을 위한 전반적인 틀의 주요 부분으로써, 지역적 체계의 향후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 보호체계들도 또한 제안사항 시행 모니터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2. 국제적 수준

120. 아동 폭력을 대처하는 데에 다양한 분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유엔총회는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의 예방과 제거를 촉진시키고, 국제적·지역적 통합을 고무하며, 현 제안사항들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고위급의 글로벌 애드보킷의 역할을 하는 아동폭력 특별대표의 임명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

121. 특별대표는 각각의 국제, 지역, 국가 포럼에서 본 연구의 제안사항들을 알리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제 65차 총회에 제출될 제안사항들의 시행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진행해야 한다.

122. 특별대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해야 하지만,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과 무력분쟁을 위한 사무총장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특별 보고관,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 보고관,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인신매매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대표는 지역 인권 보호 제도와 그 외 모든 지역 및 국가들의 사후점검을 위한 노력에 협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3. 특별대표는 일차적으로 4년간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시하고 있는 기관간의 성공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비정부기구와 아동들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유엔 아동폭력 기관간 그룹(UN Inter-agency group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도 사후점검을 지원하기를 요청한다.